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12월 11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제안이유

- 지리정보의 갱신비용을 절감하고, 지형·지물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전산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지리정보의 제공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아.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 지리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전산자료 등재를 1주일에서 1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은 1주일 기간 내에 등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간을 연장하였음.
○ 수도배관공사 등 소형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여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해 시민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대항공사도 최대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도록 조치하겠음.
○ 전기통신공사와 난방공사 등에 지리정보 이용료 100%를 감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음.
○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출시 보안문제 해결 방안은 있나요?	○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50호
의결 년월일	2008. 12. 11.

제안년월일 : 2008. 12. 11.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출기한을 일주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만 3주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제2항중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7조 생략</p> <p>제8조 ① 생략</p> <p>②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u>1개월</u>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u>연장</u>할 수 있다.</p> <p>제8조 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④ 생략</p> <p>제9조 ~ 제17조 생략</p>	<p>제1조 ~ 제7조 원안과 같음</p> <p>제8조 ① 원안과 같음</p> <p>②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u>1주일</u>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u>3주일 범위 내에서</u>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 ③ 원안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④ 원안과 같음</p> <p>제9조 ~ 제17조 원안과 같음</p>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지리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지리정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5.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란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지리정보유통망”이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사용료”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인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수수료”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1도면”이란 도형출력장치(플로터)로 출력된 A1 크기(45cm×55cm)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관리 및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관리) ①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업체에게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형·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전산자료의 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리정보의 제공) ①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리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리정보 제공의 제한)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리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리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① 지리정보를 기록매체(디스켓, 자기 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을 말한다)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용료와 전산출력도면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

③ 지리정보에 따른 복제용 디스켓·자기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의 구입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및 난방 등을 말한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부천시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 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지리정보의 보호)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지리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자 료 명		사용료 및 수수료
지 형 도		1바이트당 0.1635
기 타 도 면	1/1000 이상	1매당 7,000
	1/2500 이상	1매당 8,500
	1/5000 이상	1매당 10,100
	1/5000 미만	1매당 11,600

[별표 2]

정보제공 사용료 감면율(제13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을 말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별지 서식]

접수번호	지 리 정 보 제 공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		
사용용도				
자료제공 신청내용	자료종류			
	위 치			
	도엽번호			
	축 척		수 량	부
	제공형태	디스크·디스켓·도면출력·기타()		
<p>「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부 천 시 장 귀하</p>				
첨부서류		사용료 또는 수수료		

[수정안 포함]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지리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지리정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5.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한다.
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란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1. “지리정보유통망”이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사용료”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인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수수료”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1도면”이란 도형출력장치(플로터)로 출력된 A1 크기(45cm×55cm)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시계획, 지적관리, 교통체계, 시설물 관리 및 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리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시스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는 전담 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등) ①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의 관리) ① 시스템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작성, 수정, 삭제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3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업체에게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개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3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사업으로 지형·지물 변화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산자료의 자체 갱신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전산자료의 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리정보의 제공) ①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리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리정보 제공의 제한) 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리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리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① 지리정보를 기록매체(디스켓, 자기 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을 말한다)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사용료와 전산출력도면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

③ 지리정보에 따른 복제용 디스켓·자기테이프 및 광 디스크 등의 구입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육 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및 난방 등을 말한다)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부천시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 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지리정보의 보호)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할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지리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리정보 사용료 및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자 료 명		사용료 및 수수료
지 형 도		1바이트당 0.1635
기 타 도 면	1/1000 이상	1매당 7,000
	1/2500 이상	1매당 8,500
	1/5000 이상	1매당 10,100
	1/5000 미만	1매당 11,600

[별표 2]

정보제공 사용료 감면율(제13조제3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부천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을 말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에 제공되는 경우 • 교육연구기관의 교육연구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 등의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현행 조례)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제정 2002. 04. 10 조례 제188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지리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3.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구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등이 있다.
5.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6.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7. "전담 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 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9. "주전산기"라 함은 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 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11.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1도면"이라 함은 플로터로 출력된 A1크기(45cm×55cm)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시계획·지적관리·교통체계·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스템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①지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지하시설물도는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관리) ①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수정·삭제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1주일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에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지리정보 제공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지리정보 제공과 활용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공 제한) ①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리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등 징수방법) ①제11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등" 이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등 별도의 기록매체에 복제하는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

2. 지리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함.

②사용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수수료 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사용료등은 정보제공 통보를 받은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지리정보 복제시 디스켓·자기테이프, 광디스크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난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정보이용 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4.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등의 전산화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감면율)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보안관리

제15조 (지리정보 보호)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복구) 전담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화일)을 제작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國家地理情報體系의 構築 및 活用 등에 관한 法律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地理情報"라 함은 地形·地物·地名 및 境界 등의 位置 및 屬性에 관한 情報를 말한다.
2. "地理情報體系"라 함은 地理情報를 효과적으로 蒐集·貯藏·操作·分析·表現할 수 있도록 서로 有機的으로 連繫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人的 資源의 結合體를 말한다.
3. "國家地理情報體系"라 함은 管理機關이 構築·관리하는 地理情報體系를 말한다.
4. "地理情報流通網"이라 함은 地理情報의 生産者, 管理者 및 使用者를 서로 連結하는 通信網을 말한다.
5. "管理機關"이라 함은 地理情報를 生産·관리하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管理 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을 말한다.

第15條(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構築·관리) ①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蒐集·生産하는 地理情報를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情報體系의 標準 및 關係法令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構築·관리하여야 한다.

②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保有·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最新情報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管理機關의 長은 다른 管理機關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構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地理情報의 閱覽·複製 등 關聯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6條 (相互協力) ①政府는 地理情報를 데이터베이스로 構築·관리하기 위하여 管理機關 상호간 또는 管理機關과 産業界·學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管理機關과 産業界·學界 등과의 共同協議機構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第21條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複製·販賣 등) ①管理機關의 長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複製 또는 刊行하여 販賣 또는 配布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를 需要者에게 提供할 수 있다.

②管理機關의 長은 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를 이용하는 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③地理情報 데이터베이스로부터 出力한 資料의 이용 節次 및 手數料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